

## 우리나라 戶口調查制度的 歷史的考察

崔鳳鎬\*

### 《目 次》

- |                    |                        |
|--------------------|------------------------|
| I. 序 言             | V. 主要外國의 人口統計 作成制度  현황 |
| II. 近代以前의 戶籍制度     | VI. 主要問題點              |
| III. 近代以前의 人口推移    | VII. 結 言               |
| IV. 오늘날의 人口統計 作成制度 |                        |

### I. 序 言

인구는 일정불변한 것이 아니고 이를 구성하는 개인의 출생·사망 및 이동의 세가지 요인에 따라 부단히 그 양(규모)이 변화하고 있는 동시에 질적 내용(구조 또는 속성)도 변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변동하는 인구를 일순간에 있어서 단절하여 정지상태로서 관찰할 때 이것을 인구정태통계라고 한다. 반면 인구동태통계는 인구의 정태상태 즉 인구의 크기나 구조를 달라지게 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주는 통계가 된다. 바로 인구 통계란 이러한 인구정태통계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상호보

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시점에서 파악된 인구규모와,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학력별, 직업·산업별, 출생지별 인구구조 등은 인구정태통계의 종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태개념을 인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가구와 주택까지 확장하여 보면, 일시점에서 파악된 가구수 및 가구의 특성(가족 구조등)과 주택수 및 주택이 갖고 있는 특성이 모두 정태통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전세계에서 인구정태통계를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 출처로는 인구주택센서스를 들 수 있다.

반면 총 인구규모를 달라지게 하는 요인인 출생·사망·통계, 지역별 인구분포를 달라지게 하는 인구이동 통계, 혼인상태 구조를 달라지게 하는 혼인·이혼 통계등이 바로 인구동태

\* 統計廳 統計基準課 事務官

통계의 기본적 종류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요인(혼인이나 전출에 의한 분가등)을 파악하는 통계와 주택 유형별 분포를 달라지게 하는 건축착공 통계 등이 동태적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태통계는 특성상 신고제도에 의해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표적인 자료출처는 호적신고제도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인구정태 및 동태통계는 각종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사회 개발의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인구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제도가 일찍이 발달되어 왔다. 우리나라 경우 통일신라시대에도 호구를 파악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오늘날에는 인구주택 센서스, 상주인구조사, 호적제도, 주민등록제도, 인구추계 등으로 제도가 세분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 II. 近代以前の 戶籍制度

### 1. 新羅의 村籍制度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되고 세밀한 호구관련 기록은 일본 東大寺 正倉院에서 발견된 통일신라때의 村籍자료로 볼 수 있다. 이 자료는 당시 西原京(청주)부근의 4개 마을에 대한 기록으로서, 지금부터 약 1,200여년전인 755년(경덕왕 14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이와 같은 村籍制度의 시행목적은 組(곡물과 포), 庸(부역), 調(특산물) 부과를 위한 것으로서, 조사는 매3년 주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 기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놀라웁게도 각 촌락에 대한 경제·사회상태를 세밀하고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수록

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내용을 열거하면, 戶口數, 등급별 戶의 분포, 연령별 인구구조, 3년간 발생한 출생건수, 사망건수 및 전·출입자수등의 인구자료 뿐만 아니라 마을의 면적, 牛·馬수, 뽕나무수, 경작토지의 田畝別結數등이 수록되어 있어 경탄스러울 따름이다.

이 중에서 몇가지 인구관련자료를 정리·요약 하여 표 1에 수록하여 보았다. 동표를 작성함에 있어, 원래 기록에 4개 마을에 대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각 마을을 편의상 각각 A, B, C, D村으로 구분하였다. 각 마을의 戶口數를 살펴보면, A村의 경우 戶數는 11戶에 인구는 142명, B村은 15戶에 125명, C村의 경우 기록이 몇줄 마멸되어 있어 확실치는 않으나 8戶정도에 69명, D村은 10戶에 106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戶口자료로 부터 먼저 눈에 띄는 것은 4개 촌락에서의 평균가구원 수가 10명(442명/44戶)으로 계산된다는 점이다. 만약 실제 戶당 가구원 수가 10명이라고 하면, 당시의 가족규모가 상당히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역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가구원 수가 너무 많지 않나 싶다. 즉, 여기서 말하는 戶가 自然戶가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당시 3년동안 전·출입 가구의 가족규모를 보면 3인 가족 1, 4인 가족 2, 5인 가족 1, 6인 가족 2, 11인 가족이 한개있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戶당 가구원 수 10명은 너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로 이 4개 촌락의 총 44호를 9개 등급으로 구분하였을 때 상층에 속하는 戶는 하나도 없는 반면 下中戶는 7, 下下戶는 26戶로서 하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마을임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로, 인구변동의 요인이 되는 당시 人口動態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4개 마

을에서 3년간 태어난 아이는 모두 31명으로서 이를 442명으로 나눈 후 다시 3개년으로 나누게 되면 연간 출생율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된 출생율은 2.3%로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sup>1)</sup> 반면, 사망자수에 대한 기록이 훼손된 B村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촌에서의 사

망율을 계산하게 되면 3.9%로서 높은 사망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4개 마을에서는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아, 인구가 자연적(출생·사망)으로나 사회적(전입·전출)으로 모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新羅村籍에서의 주요 인구자료

	A 村	B 村	C 村	D 村
戶 數	11	15	註 <sup>1)</sup>	10
中下戶	4	1	0	0
下上戶	2	2	0	0
下中戶	0	5	1	1
下下戶	5	6	6	9
轉入戶	0	1	1	0
人口數	142	125	69	106
男 子	64	47	37	46
女 子	78	78	32	60
3年間の 出生數	13	6	5	7
男 子	5	3	3	1
女 子	8	3	2	6
3年間の 死亡數	10	註 <sup>2)</sup>	6	21
男 子	4	—	2	9
女 子	6	—	4	12
3年刊의 轉入者數 <sup>4)</sup>	2	7	7	4
男 子	2	3	3	2
女 子	0	4	4	2
3年間の 轉出者數 <sup>5)</sup>	12	註 <sup>3)</sup>	4	29
男 子	6	—	2	14
女 子	6	—	2	15

자료 : 李光奎, 한국가족의 史的研究, 一志社, 1986에서 計算

주 : 1) 8戶 이상인것은 확실하나 정확히는 알 수 없음.

2) 몇 명이 사망하였는지 추정 불가.

3) 3명 이상인것은 확실하나 정확히는 알 수 없음.

4) 전입형태를 살펴보면 A村은 단독이동 2명, B촌은 단독이동 3명, 1가족이동 4명, C촌은 단독이동 1명, 1가족이동 6명, D촌은 단독이동 4명임.

5) 전출형태를 살펴보면 A村은 단독이동 7명, 1가족이동 5명, C촌은 단독이동 4명, D촌은 단독이동 8명과 6인가족, 11인가족, 4인가족 이동이 있었음.

1) 2.3%의 출생율은 1980년 수준과 비슷한 수치임, 당시의 출생율이 낮게 나타나는 사유로는 영·유아기 때 죽은 아이들이 출생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거나 또는 마을의 특성상 가임기의 여자수가 적기 때문으로 생각됨.

넷째로, 연령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저연령층 인구가 많은 구조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연령계급을 6개로 구분(小子, 追子, 助子, 丁, 除公, 老公)한것으로 보이는데, 이중 60세 이상(除公 및 老公)으로 추정되는 인구는 11명으로 전체인구의 2.5%에 불과하다. 반면, 丁의 인구는 234명으로서 5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연령층 인구는 197명에 44.7%로서 거의 丁의 수치에 접근하고 있어 피라미드형태의 인구구조가 아니었나 싶다(표 2 참조).

다섯째로, 3년동안에 죽은 37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저연령층에서의 사망자가 12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옛날의 호구기록에서 대개 빠지고 있는 출생후 영·유아기에 죽는 아이까지를 감

표 2. 연령별 인구수 및 연령별 사망자

	計	男	女
(연령별 인구 수)			
計	442	184	238
3年間中産小(女)子	31	12	9
小(女)子	52	29	23
追(女)子	67	30	37
助(女)子	47	23	24
丁(女)	234	95	139
除公(母)	3	1	2
老公(母)	8	4	4
(연령별 사망자)			
計	37	15	22
小(女)子	11	4	7
追(女)子	1	1	0
助(女)子	0	0	0
丁(女)	14	7	7
除公(母)	1	0	1
老公(母)	10	3	7

자료 : 이광규, 한국기록의 사적연구, 일지사, 1986에서 계산

안한다면 저연령층에서의 사망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이상에서 우리 선조들은 지금부터 1200여전에 이미 村籍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많은 귀중한 統計를 생산·활용하였음을 알아보았다. 오늘날에는 호적신고, 주민등록신고, 인구총조사, 농업총조사 등에서 개별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자료들이 예전에는 종합적으로 村籍기록을 통해서 파악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2. 高麗의 戶籍制度

이러한 마을을 중심으로 한 村籍制度는 高麗時代로 넘어오면서 個別戶를 대상으로 하는 戶口成籍제도로 바뀌면서 보다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成籍는 매3년마다 이루어졌으며, 담당기관은 成宗시(982-997년)에 설치된 六部중의 하나인 戶部가 관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목적도 종전의 賦稅, 徵役, 徵兵을 위한 戶口調査라는 기능외에 신분확인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있는것이 특징으로, 우리나라에서 족보가 발달한 것은 이러한 高麗의 戶籍調査관행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고려시대의 기록을 거의 발견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당시의 사회상을 살펴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3. 朝鮮의 戶籍制度

조선시대의 호구성적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초기에는 고려의 구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세종 10년(1428년)에 이르러 戶口成給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호적부에 작성년월일, 행정구역, 작성경위와 ① 호주의 신분, 이름, 나이 및 본관 ② 호주의 四祖(父, 祖, 增祖, 母, 外祖)에 대한 신분 ③ 처의 이름 및 나이 ④ 처의 四祖에 대한 신분, 이름 및 본관 ⑤ 자식의 이름 및 나이 ⑥ 노비 등의

항목을 기록토록 하였다.

이에 세조-성종년간에 편찬된 경국대전에서는 호구성적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확립하였으며 奸僞에 의한 避役과 漏戶·漏口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五家作統制(세종 7년의 隣保制와 비슷한 것으로 보임)와 호패제를 병행하여 시행토록 하였다.<sup>2)</sup>

그러나 이렇게 호구성적 제도 자체는 완벽하고 엄격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정도높게 호구통계의 생산이 어렵지 않았나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호구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賦稅, 요역, 徵兵을 면탈하기 위하거나 신분상승의 목적으로 허위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높은 幼兒死亡率 때문에 어린아이가 성인에 달하기 전에는 신고를 기피하거나, 노비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漏戶 및 漏口의 문제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度支志의 편찬자인 朴一原是 漏戶·漏口 문제를 언급하면서 조사호수 172만호에 漏戶는 30여만호으로 함께 200만호, 조사된 인구 733만명에 漏戶는 267만명으로 함께 천만명을 당시(1778년)조선의 戶口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sup>3)</sup>

이와 아울러 당시 호적부의 작성이 호주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식에 관련된 사항만 기재토록 되어 있고, 자식의 처나 손자·손녀들은 제외되어 있어 호적부를 기초로한 가족규모가 적게 파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4)</sup>

이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같은 戶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① 賣戶 또는 法制戶(賦稅, 요역을 위한 목적으로 중아에서 미리 호수를 정하여 각 지방으로 할당되는 戶) ② 호구성적상의 戶(이는 백성이 작성제출한 戶口單子를 기초로 한 戶임) ③ 煙戶 또는 자연호(이는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 戶로서 오가작통제에서의 戶가 이 기준으로 추측됨)등으로 나뉘어져 그 당시의 호구통계 작성에 있어서 혼란상을 추측하여 볼 수 있다.<sup>5)</sup>

여기서 가장 바람직할 상황은 賣戶수나 호구성적상의 戶수나 煙戶수가 상호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기록에 의하면 상호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앙에서는 가급적 많게 賣戶를 할당시키고자 한 반면, 백성들은 이를 가급적 줄이고자 하였기 때문에 실제의 煙戶를 기초로 한 호구통계작성이 어려웠던 것 같다. 이런 과정에서 호구과악 업무를 담당할 지방관리들의 농간도 있어 백성들의 피해는 매우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sup>6)</sup>

이러한 문제는 茶山 정약용(1762·1836)의 목민심서 戶典 호적편에 잘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개선안으로 한 고을의 수령이 된 자는 실제의 煙戶를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인구의 특성 및 생활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家坐之簿를 만들고 아울러 經緯表를 작성, 선정을 베푸는데 활용토록 제시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그는 이미 오늘날과 같은 지도작성의 필요성과 비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 및 조사 환경 여건의 중요성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sup>7)</sup>

2) 윤종주, 우리나라 인구동태 신고체계의 史的고찰, 인문사회과학 논집 제2집, 서울여대, 1987

3) 손정목, 戶口와 주민구성, 서울 600년사에서 인용

4) 따라서 高麗시대나 朝鮮시대의 戶籍을 이용하여 가족구조등을 연구할때 당시 호적부에 기재된 가족사항이 실제와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이수건, 조선초기 호구연구, 한국사 논문선집 IV, 1976

6) 인정, 족징, 白骨徵布, 黃口簽丁, 降年債, 磨勘責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7) 민족문화추진위, 국역 목민심서, 1969

#### 4. 近代의 戶籍制度

결국 이와 같은 건의들이 쌓여 甲午更張 2년 후인 1896년에 戶口調査 規則(칙령 제61호)이 9월1일자로 공포되어 근대적인 제도로의 변모를 보게 되는 것이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戶口成籍이 매3년마다 이루어졌으나, 신제도에서는 매년1월에 戶籍뿐만 아니라 統表를 별도로 작성토록하고, 분적과 개적

도 수시하도록 함으로서 戶口調査 시행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때부터 戶口統計가 매년 작성될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고, 이는 다시 오늘날 常任人口調査로 계승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규칙에 의한 戶口調査에서는 統表양식 자체가 連記式 조사표 방식으로 되어 있어 남녀별 인구수는 파악할 수 있었으나 인구의 여러가지 특성을 파악할 수 없는 결함이

<그림 1> 호구조사제도의 시대별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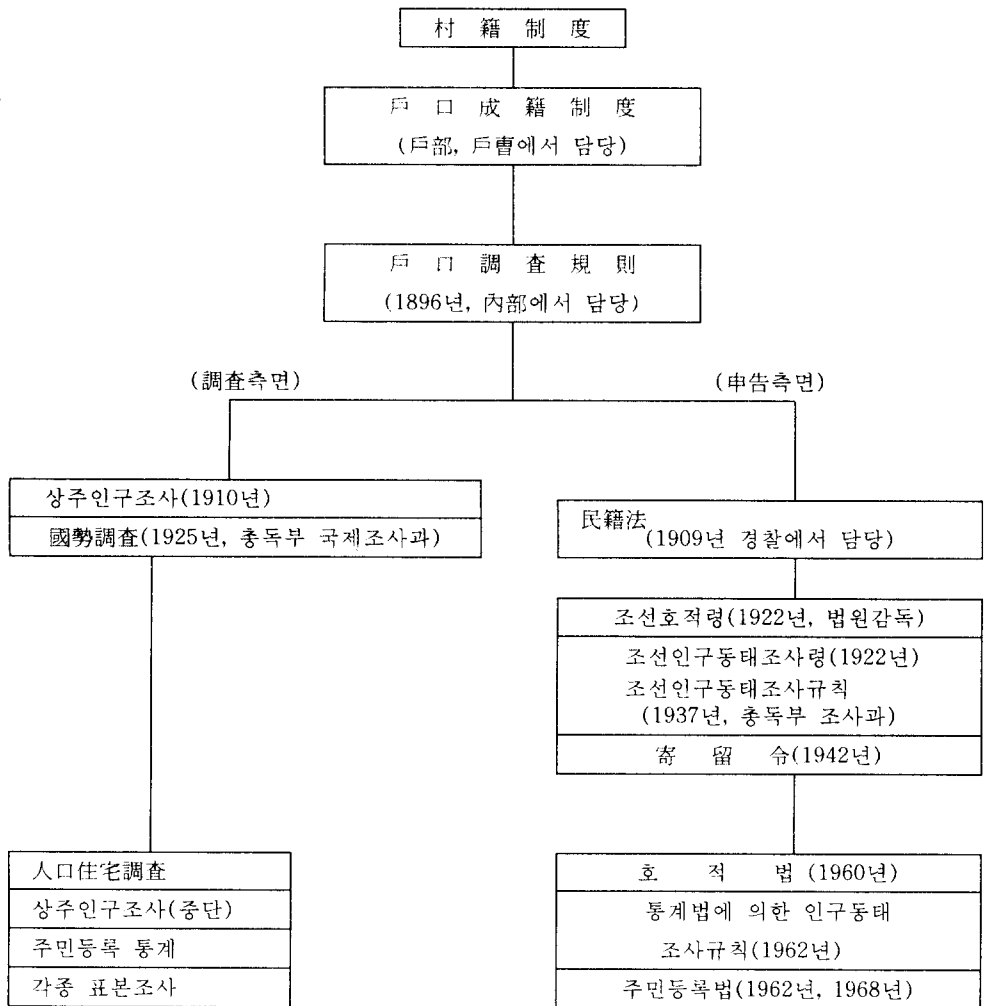
統一新羅 :

高麗 및 朝鮮 :

開化期 :

日帝下 :

現在 :



있었다. 따라서 戶口調査에서 파악이 안되는 인구의 여러가지 특성(연령, 혼인상태, 학력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1925년에 근대적인 의미의 國勢調査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는 오늘날의 인구주택 총조사로 발전·계승되어온 것이다.

한편, 오늘날의 申告制度(호적과 주민등록)의 효시로는 호구조사규칙을 폐지하는 대신 1909년에 제정된 民籍法을 꼽을 수 있다. 이 民籍法은 거주지역에 따라 호구수를 파악하기 위한 호구조사적 성격을 가지기 보다는, 家 및 個人의 신분확인 측면이 보다 강조된 것으로 혈연 중심적인 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부터 本籍地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이 本籍地에다 출생·사망등 신분관계의 변동뿐만 아니라 전출입사항 등의 호구변동 상황을 발생일로 부터 10일이내 신고

토록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民籍法은 발전하는 과정 중에 다시 戶籍制度와 住民登錄制度로 양분하게 되었다. 그 사유는 경제·사회적 발전에 따른 빈번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戶籍이 있는곳(本籍地)이 실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곳(住所地)과 점차 괴리현상을 보여 본적지 이외의 곳에 주민의 생활과 일치되는 주소지를 인정하는 제도의 필요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호적업무가 내무부 계통이 아닌 司法府(法院)의 감독업무로 되어 있었던 점도 신고제도의 二元化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그림 1).

### Ⅲ. 近代以前の 人口推移

참고로 우리나라의 과거 인구는 과연 얼마나

표 3. 時代別 戶口記錄 資料

時 代	年 度	戶	口	자 료 출 처
三國時代 <sup>1)</sup>	고구려 전성시(491)	210,508	-	삼국유사 권1 고구려조
	백 제 전성시(554)	152,300	-	삼국유사 권1 변한 백제조
	신 라 전성시(576)	178,936	-	삼국유사 권1 진한조
	고구려 멸망시(668)	697,000	-	舊唐書 卷199 東夷傳
	백 제 멸망시(660)	760,000	-	삼국유사 권1 太宗春秋公條
高 麗 <sup>2)</sup>	고 려전 성 시	-	2,100,000	宋史高麗傳
朝 鮮 <sup>3)</sup>	인 조17년(1639)	441,827	1,521,156	戶口總數
	현 종 7년(1666)	1,108,351	4,107,156	戶口總數
	숙 종16년(1690)	1,514,000	6,952,907	戶口總數
	고 종 원 년(1864)	1,703,450	6,828,521	
	순 종 2년(1907)	2,333,087	9,781,671	경찰관서조사(5.20)
日 帝 下 <sup>3)</sup>	1910	2,742,103	12,935,282	民籍法實地調査(5.10)
	1925	3,720,773	19,522,945	제1회 간이國勢調査결과

자료: 1) 윤종주, 우리나라 古代人口에 관한 小考, 한국인구학회지, 1985

2) 진단학회, 한국사, 을유문화사, 1969

3) 統友會, 한국통계발전사, 1989

주: 1) 고구려 및 백제 멸망시의 수치는 기록에 戶로 나타나 있으나 일반적으로 人口數로 보고있음.

2) 1907년 및 1910년의 수치는 경찰계통을 통한 조사 결과로서, 조선총독부의 統計年表에 수록된 연말 기준 수치보다는 적게 나타나나, 1906년 內部の 조사결과와 비교하게 되면 월등히 많아 이 당시 조사를 엄격하게 하였음을 반증함.

되는가 하는 평소 의문을 풀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과거의 여러가지 戶口記錄에 대한 자료를 표 3에 수록하여 보았다. 먼저 삼국시대의 기록은 三國遺事에 단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삼국시대 전성시 戶數의 합계(신라 178,936戶, 고구려 210,508戶, 백제 152,300戶)가 541,744戶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戶당 가구원수를 평균 5명이라 가정하면, 삼국시대의 총인구는 2,708,720명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sup>8)</sup> 高麗시대의 경우는 人口數가 오직 宋史 高麗條에서만 발견되는데, 여기서 총인구를 2백 10만 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당시 고려측으로 부터 제공받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서 신뢰성이 높지만, 이 기록만 갖고 고려시대의 정확한 인구수를 추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sup>9)</sup>

朝鮮시대로 넘어와서는 17세기 중엽까지 호구수에 대한 기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단지, 1400년 전후에 몇가지 기록이 있으나 戶口數가 터무니 없이 적게 나타나, 당시의 제도가 상당히 취약했거나 아니면 戶口를 헤아리는 방법이 나중과 달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서 인구수가 7백만명 수준으로 파악된 것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100년이 지난 17세기 후반 부터이다. 이때부터 700만명 수준의 인구 규모는 1900년경까지 계속되는데, 아마도 인구 동태형태가 多産多死로 인구의 변동이 그다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액면 그대로 조선시대의 인구를 700

만명 수준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漏戶·漏口가 있어 문제가 있다. 따라서 度支志의 편찬자인 朴一原이 지적한 바와 같이 漏戶·漏口를 감안하여 본다면, 조선시대에서의 실제 戶數는 약 200만호에 人口數는 약 천만명 수준이 아니었나 싶다.<sup>10)</sup> 이렇게 조선시대의 인구를 천만명 수준으로 보더라도, 오늘날의 우리민족의 인구수(1990년 현재 남한 42,869천명, 북한 21,720천명, 해외동포 500만명으로 합계 7천만명)는 조선시대보다 10배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여 볼 수 있다.

아울러 표 4에 예전의 행정구역별로 1786년, 1864년 및 1925년에 대한 戶口數를 수록하여 보았다. 동표로 부터 우리는 대략 당시의 지역별 인구분포를 살펴볼 수 있다.

지금부터 약 200년전인 正祖때 당시 서울의 인구는 20만명 수준에 불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울의 인구가 오늘날에는 50배 이상 늘어난 천만명 이상으로 된 초거대 도시가 된 것이다.

한편 당시 북쪽지방(황해, 평안, 함경도)의 인구비율은 남쪽지방의 52.1%로서, 오늘날의 남한대비 북한인구비율 50.7%와 큰 차이가 없음도 알 수 있다. 그리고 戶당 평균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평균 4.2명에 불과하여 당시의 가족제도가 대가족형태가 많았던 것으로 가정하여 볼 때 人口가 과소조사 되었다고 추측되며, 또한 도별로도 호당 평균가구원수의 큰 차이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주고 있다.<sup>11)</sup>

8) 윤종주, 우리나라 古代人口에 관한 小考, 인구학회지, 1985

9) 진단학회, 한국사, 올유문화사, 1959~1967

10) 法制處, 度支志(제1권), 법제자료 제91집, 1977에서 인용

11) 漏口문제도 있었겠지만 이보다는 당시 호적부 작성방법에 있어 戶主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식까지만 기재토록하고 며느리나 曾孫등은 제외되었기 때문 戶당 평균인원수가 적은 것으로 생각됨.



표 4. 行政區域別 戶口資料

	正祖10年(1786) <sup>1)</sup>			고종 원년(1864) <sup>2)</sup>			1925國勢調査 <sup>3)</sup>		
	戶	人口	戶當人口	戶	人口	戶當人口	戶	人口	戶當人口
計	1,737,670	7,356,783	4.17	1,703,450	6,828,521	4.01	3,720,773	19,522,945	5.25
경오구	42,786	199,127	4.65	46,565	202,693	4.35	70,628	342,626	4.85
경 기	157,270	637,482	4.05	158,091	674,399	4.27	320,536	1,676,482	5.23
강 원	80,487	325,804	4.05	81,230	332,173	4.09	247,639	1,332,352	5.38
충 청	220,388	864,887	3.92	223,514	879,040	3.93	400,474	2,129,514	5.32
전 라	307,696	1,158,861	3.77	260,982	996,814	3.82	663,199	3,322,329	5.01
경 상	362,799	1,588,624	4.38	357,430	1,521,273	4.26	838,288	4,354,459	5.19
세 주	10,721	62,416	5.82	11,877	85,778	7.22	51,073	205,194	4.02
황 해	136,248	564,734	4.14	128,356	567,852	4.42	288,266	1,461,879	5.07
평 안	299,523	1,288,399	4.30	217,577	872,825	4.01	492,688	2,658,868	5.40
합 경	119,752	666,449	5.57	118,815	695,728	5.86	347,982	2,093,242	5.86

자료 : 1) 法制處, 度支志(제1권), 法制資料 第91輯, 1977

2) 善生永助, 朝鮮의 人口研究, 1925

3) 조선총독부, 제1회 간이국세조사 보고서

주 : 1) 高宗元年 자료의 경우 행정구역별 戶數합계(1,604,448)가 원래의 기록(1,703,450호)과 일치하지 않음.

2) 1925년 國勢調査에 외국인인 포함되어 있으며, 世帶는 보통세대와 준세대로 구분되고 있음.

#### IV. 오늘날의 人口統計 作成制度

##### 1.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란 일정 시점에서 일정 지역내에 살고 있는 인구의 모든 특성에 대한 전수조사라고 할 수 있다.

유엔에서 채택하고 있는 센서스의 정의에 따르면, 센서스는 개인별 조사(individual), 전국 단위조사(universality), 동시적조사(simultaneity), 일정한 주기성(defined periodicity)을 갖는 조사 등의 4가지 요건을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 맞는 센서스를 근대적 의미의 센서스라 하며, 옛날의 조사과정과 방법이 엄격하게 통제되지 못하였던 소위 전통적인 센서스와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근대적 의미의 인구센서스 실시는 1925년이 처음이 되며, 그 후 매 5년마다 조사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 그리고 인구센서스에다 주택 관련 항목을 처음으로 추가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따라서 1990년 조사는 인구측면에서는 제14차가 되며, 주택측면에서는 제6차가 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센서스를 기하여 명칭도 총조사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1970년 이후 총조사에서 파악된 조사항목은 표 1에 있다.

그리고 차후 센서스 실시와 관련하여서 유엔에서는 다음 사항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즉 자료수집방법(센서스 이외의 자료 활용 방안), 센서스에서의 완전율, 조사항목, 비밀보장, 자료의 수정(imputation), 자료의 검색

및 활용, 자료의 입력방법(분산 또는 집중형) 등의 측면이 주요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sup>12)</sup> 특히, 우리의 경우 유엔이 지적한 쟁점 이외에 최대한 관심을 쏟아야 할 사항은 ① 우수한 자질의 조사원을 확보하는 것, ②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식의 증대에 따른 국민의 협조를 얻어내

표 5. 인구 센서스의 조사항목 비교

	1970	1975	1980	1985	1990
· 상주지	○	○	○	○	○
· 이름	○	○	○	○	○
· 분관	×	×	×	○	×
· 가구주의 관계	○	○	○	○	○
· 성별	○	○	○	○	○
· 나이(출생년월일)	○	○	○	○	○
· 출생지	△	×	△	○	○
· 1년전 거주지	×	×	△	○	△
· 5년전 거주지	△	△	△	○	△
· 혼인상태	○	○	○	○	○
· 교육정도	○	○	○	○	○
· 전공학과	×	×	△	×	×
· 종교	×	×	×	○	×
· 경제활동상태	△	△	△	○	△
· 취업여부	△	△	△	×	×
· 구직활동 여부	×	△	△	×	×
· 산업	△	△	△	○	△
· 종사상의 지위	△	△	△	×	△
· 직업	△	△	△	○	△
· 취업한 곳의 형태	×	△	×	×	×
· 취업시간	×	△	×	×	×
· 추가 취업 희망 여부	×	△	×	×	×
· 취업시간	△	×	×	×	×
· 초혼연령	×	△	△	×	△
· 총출생자녀수	△	△	△	○	△
· 생존자녀수	△	△	△	○	△
· 사망자녀수	×	△	△	○	△
· 통근·학 여부	×	×	△	×	○
· 통근·학지	×	×	△	×	○
· 이용교통 수단	×	×	△	×	○
· 출발·도착 시각	×	×	×	×	○
· 문맹 여부	○	×	×	×	×

주 : ○ 표는 전수조사 항목이며,  
△ 표는 표본조사 항목임.

표 6. 住宅센서스의 調査事項 比較

	1970	1975	1980	1985	1990
(家口에 관한 事項)					
· 居處의 種類	○	○	○	○	○
· 主家口·同居家口 區分	○	○	○	○	○
· 주택소유 關係	○	○	○	○	○
· 賃借料	×	×	×	○	△
· 使用房數	○	○	○	○	○
· 使用食水	×	×	○	×	○
· 炊事燃料	○	△	○	○	○
· 暖房燃料	×	×	○	×	○
· 暖房施設	×	×	×	×	○
· 文化施設 및 家財	○	△	○	○	○
· 月平均 所得	×	△	×	×	△
· 所得의 種類	×	△	×	×	×
· 便益施設의 單獨使用與否	×	×	×	○	○
· 부엌시설 형태	×	×	×	×	○
· 화장실시설 형태	×	×	×	×	○
· 목욕시설 형태	×	×	×	×	○
· 상수도시설 有無	×	×	×	×	○
(住宅에 관한 事項)					
· 외벽재료	△	△	○	×	○
· 지붕재료	△	△	○	×	○
· 建設坪	○	○	○	○	○
· 垜地面積	×	×	○	×	○
· 總房數	○	○	○	○	○
· 同居家口數	○	○	○	○	○
· 건축年度	○	○	○	×	○
· 부엌시설 형태	×	×	○	○	×
· 화장실시설 형태	○	×	○	○	×
· 목욕시설 형태	×	×	○	×	×
· 상수도시설 유무	△	×	○	×	×
· 난방시설 형태	×	×	○	○	×
· 居住可能 家口數	×	×	×	○	○
· 便益施設 個數	×	×	×	○	○

註 : ○ 표는 全數調査 項目이며,  
△ 표는 標本調査 項目임.

12) UN, Emerging Trends and Issues i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Series F No. 52, 1991

는 것, ③ 독신자나 맞벌이 가구 증가등 응답자의 가구·부채 증가 현상에 따른 대처방안 강구등을 지적할 수 있다.

## 2. 상주인구조사

본 조사는 1896년에 제정된 호구 조사 규칙을 모체로 하여 1910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1945년부터 1954년까지는 사회의 불안정과 인구가동이 심하였고, 지역적 범위의 상이로 그 결과는 거의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다가 1955년 이후 통계업무가 당시 공보처로부터 내무부로 이관되면서 상주인구조사를 재개하여 인구 센서스 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다.

1961년 통계국이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면서, 통계법이 공포된 후 연말 상주인구조사는 명칭으로 지정통계 제7호로 지정되었고, 또한 통계법 제3조와 각 시·도의 상주인구조사 실시조례에 의하여 종래 중앙에서 주관하였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조사 업무를 이관하고 조사시점도 12월 31일에서 12월 1일로 변경하였다. 다시 1965년에 와서는 조사시점을 10월 1일로 변경하고 명칭에서도 연말이란 단어가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본 상주인구조사는 조사 체계의 미흡으로 자료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1968년의 조사 결과는 공표를 유보하였고 1969년에는 조사자체를 중지하였다가 1971년부터 이를 다시 재개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조사결과에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 1991년의 경우 서울·부산에서는 동 조사가 중단되기도 하였으며, 1992년에는 조사가 모든 시·도에서 완전히 중단되었다. 대신 동기능의 역할을 주민등록에서 담당토록하여, 1992년말부터는 주민등록상 인구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 3. 호적(인구동태)신고

현재와 같은 호적제도는 1909년에 민적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서 前 시대의 호적제도와 완전히 결별하고 호적이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식·증명하는 문서로서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호적제도는 1922년에 조선 호적령이 시행되면서 보다 보완이 됨과 동시에 호적사무의 관장이 종전대로 읍·면장의 책임 아래 있으나 감독은 사법부에 소속되어 관찰 지방법원장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호적제도는 家 및 개인의 신분 관계를 법적으로 공증하여 주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출생·사망·혼인·이혼등의 인구동태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1937년에 조선 인구동태 조사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인구통태 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여 단지 신고된 건수만이 집계되었고 또한 그 내용도 불완전하여 동태통계 자료로서는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1937년에 제정된 규칙에서는 1) 출생·사망·혼인·이혼에 관한 동태사건을, 2) 본적지 주의에 따라, 3) 읍·면→군→도→총독부관방 국세조사과에로의 체계를 통해서, 4) 인구동태 통계를 별도로 집계토록함을 규정하고 있다. 단지 오늘날과 틀린 점은 인구동태 조사표를 기 접수된 호적신고서로 부터 베끼게끔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후 8·15 해방 및 6·25전쟁 등으로 인한 호적 사무의 혼란과 더불어 인구동태통계의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62년에 제정된 통계법에 의거 인구동태신고 통계가 지정 통계 제3호로 지정이 되었고 또한 인구동태 조사규칙이 제정되면서 인구동태 통계 작성의 틀이 마련되었다.

물론 1962년 이전의 혼란기 와중에도 미군 정청이 1946년 1월 1일자로 위생통계 규칙을 공포한 바 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에는 인구동태 조사령과 시행 규칙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특징이라면 1) 국민신고제도를 채택하여, 2) 현주지 주의로, 3) 인구동태를 별도의 인구동태 조사 신고 양식으로 신고케 하여, 4) 인구동태 통계 수집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의 변동 사항으로는 1970년에 호적 신고양식에 인구동태 조사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즉 신고서 양식이 일원화되어 인구동태 통계는 호적 신고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4. 주민등록제도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게 된 동기는 사회·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인구가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서 호적이 있는 곳

표 7. 우리나라의 人口統計作成制度 要約

	人口 住宅 總調査	人口 動態 申告	住民登錄人口
事務主管機關	統計廳	法院行政處 法政課	內務部 指導課
法的根據	人口 및 住宅센서스 施行規則 (統計法에 依한 指定統計 第1號 및 第2號가 됨)	戶籍法, 人口動態調査 施行規則 (統計法에 依한 指定統計 第3號가 됨)	住民登錄法 統計法에 依한 一般統計가 됨.
作成統計種類	人口, 家口 및 住宅에 關한 諸般 特性	出生, 死亡, 婚姻, 離婚에 關한 統計	住民登錄上人口 및 轉出入申告에 依한 移動統計
統計作成機關	統計廳	統計廳	統計廳
資料粹集方法	有給調査員에 依한 面接調査	戶籍申告	轉出入申告
報告과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同·邑·面 統計擔當</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區廳 企劃 監查課 統計係, 郡廳企劃室 統計係, 市廳企劃擔當官室 統計係<sup>1)</sup></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市·道 統計擔當官室</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統計廳</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邑·面 戶籍擔當<sup>2)</sup></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div style="text-align: center;">業務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區·市廳 市民課</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地方法院 戶籍課</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法 院 行 政 處</div> </div> <div style="width: 45%;"> <div style="text-align: center;">↓ 統計</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區·市廳 市民課 郡廳企劃室<sup>3)</sup></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市 道 統 計 擔 當 官 室</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統 計 廳</div>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市·面·洞 住民登錄擔當</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div style="text-align: center;">業務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市·市廳 總務課<sup>4)</sup> 郡 廳 內 務 課</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市 廳 行 政 課 道 廳 地 方 廳</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內 務 課</div> </div> <div style="width: 45%;"> <div style="text-align: center;">↓ 統計</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市·市廳 總務課<sup>4)</sup> 郡 廳 企 劃 室</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市·道 統 計 擔 當 官 室</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統 計 廳</div> </div> </div>

註記 : 1) 일부 市에서는 統計係가 總務課에 소속되어 있음.  
 2) 洞事務所에서는 出生·死亡에 한해서 申告를 接受만 하고 있음.  
 3) 戶籍簿의 管理는 안하고 단지 申告書 聚合 및 送付만 담당.  
 4) 일부 市에서는 市民課에서 住民謄錄業務 담당.

는 것, ③ 독신자나 맞벌이 가구 증가등 응답자의 가구·부채 증가 현상에 따른 대처방안 강구등을 지적할 수 있다.

## 2. 상주인구조사

본 조사는 1896년에 제정된 호구 조사 규칙을 모체로 하여 1910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1945년부터 1954년까지는 사회의 불안정과 인구가동이 심하였고, 지역적 범위의 상이로 그 결과는 거의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다가 1955년 이후 통계업무가 당시 공보처로부터 내무부로 이관되면서 상주인구조사를 재개하여 인구 센서스 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다.

1961년 통계국이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면서, 통계법이 공표된 후 연말 상주인구조사는 명칭으로 지정통계 제7호로 지정되었고, 또한 통계법 제3조와 각 시·도의 상주인구조사 실시조례에 의하여 종래 중앙에서 주관하였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조사 업무를 이관하고 조사시점도 12월 31일에서 12월 1일로 변경하였다. 다시 1965년에 와서는 조사시점을 10월 1일로 변경하고 명칭에서도 연말이란 단어가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본 상주인구조사는 조사 체계의 미흡으로 자료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1968년의 조사 결과는 공표를 유보하였고 1969년에는 조사자체를 중지하였다가 1971년부터 이를 다시 재개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조사결과에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 1991년의 경우 서울·부산에서는 동 조사가 중단되기도 하였으며, 1992년에는 조사가 모든 시·도에서 완전히 중단되었다. 대신 동기능의 역할을 주민등록에서 담당토록하여, 1992년말부터는 주민등록상 인구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 3. 호적(인구동태)신고

현재와 같은 호적제도는 1909년에 민적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서 前 시대의 호적제도와 완전히 결별하고 호적이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식·증명하는 문서로서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호적제도는 1922년에 조선 호적령이 시행되면서 보다 보완이 됨과 동시에 호적사무의 관장이 종전대로 읍·면장의 책임 아래 있으나 감독은 사법부에 소속되어 관찰 지방법원장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호적제도는 家 및 개인의 신분 관계를 법적으로 공증하여 주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출생·사망·혼인·이혼등의 인구동태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1937년에 조선 인구동태 조사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인구통태 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여 단지 신고된 건수만이 집계되었고 또한 그 내용도 불완전하여 동태통계 자료로서는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1937년에 제정된 규칙에서는 1) 출생·사망·혼인·이혼에 관한 동태사건을, 2) 본적지주의에 따라, 3) 읍·면→군→도→총독부관방 국세조사과에로의 체계를 통해서, 4) 인구동태통계를 별도로 집계토록함을 규정하고 있다. 단지 오늘날과 틀린 점은 인구동태 조사표를 기 접수된 호적신고서로 부터 베끼게끔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후 8·15 해방 및 6·25전쟁 등으로 인한 호적 사무의 혼란과 더불어 인구동태통계의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62년에 제정된 통계법에 의거 인구동태신고 통계가 지정 통계 제3호로 지정이 되었고 또한 인구동태 조사규칙이 제정되면서 인구동태 통계 작성의 틀이 마련되었다.

물론 1962년 이전의 혼란기 와중에도 미군정청이 1946년 1월 1일자로 위생통계 규칙을 공포한 바 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직후인

1949년에는 인구동태 조사령과 시행 규칙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특징이라면 1) 국민신고제도를 채택하여, 2) 현주지 주의로, 3) 인구동태를 별도의 인구동태 조사 신고 양식으로 신고케 하여, 4) 인구동태 통계 수집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의 변동 사항으로는 1970년에 호적 신고양식에 인구동태 조사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즉 신고서 양식이 일원화되어 인구동태 통계는 호적 신고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4. 주민등록제도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게 된 동기는 사회·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인구가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서 호적이 있는 곳

표 7. 우리나라의 人口統計作成制度 要約

	人口 住宅 總調査	人口 動態 申告	住民登錄人口
事務主管機關	統計廳	法院行政處 法政課	內務部 指導課
法的根據	人口 및 住宅센서스 施行規則 (統計法에 依한 指定統計 第1號 및 第2號가 됨)	戶籍法, 人口動態調査 施行規則 (統計法에 依한 指定統計 第3號가 됨)	住民登錄法 統計法에 依한 一般統計가 됨.
作成統計種類	人口, 家口 및 住宅에 關한 諸般 特性	出生, 死亡, 婚姻, 離婚에 關한 統計	住民登錄上人口 및 轉出入申告에 依한 移動統計
統計作成機關	統計廳	統計廳	統計廳
資料粹集方法	有給調査員에 依한 面接調査	戶籍申告	轉出入申告
報告과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同·邑·面 統計擔當</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區廳 企劃 監查課 統計係, 郡廳企劃室 統計係, 市廳企劃擔當官室 統計係<sup>1)</sup></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市·道 統計擔當官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統計廳</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邑·面 戶籍擔當<sup>2)</sup></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業務 ↓ 區·市廳 市民課</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統計 區·市廳 市民課 郡廳企劃室<sup>3)</sup></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地方法院 戶籍課</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市·道 統計 擔當官室</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法 院 行 政 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統 計 廳</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市·面·洞 住民登錄擔當</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業務 ↓ 市·市廳 總務課<sup>4)</sup> 郡 廳 內務課</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統計 市·市廳 總務課<sup>4)</sup> 郡 廳 企劃室</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市 廳 行 政 課 道 廳 地 方 廳</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市·道 統 計 擔 當 官 室</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內 務 課</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統 計 廳</div> </div>

註記: 1) 일부 市에서는 統計係가 總務課에 소속되어 있음.  
 2) 洞事務所에서는 出生·死亡에 한해서 申告를 接受만 하고 있음.  
 3) 戶籍簿의 管理는 안하고 단지 申告書 聚合 및 送付만 담당.  
 4) 일부 市에서는 市民課에서 住民謄錄業務 담당.

(본적지)이 실제 생활을 영위하는 곳(주소지)과 점차 괴리현상을 보여, 본적지 이외의 곳에 주민의 생활과 일치할 수 있는 주소지를 인정하는 제도의 필요성 때문이다.

따라서 1942년 6월 26일에 처음으로 寄留(키류)을 제정, 실시하여 본적지 이외의 곳에 공증할 수 있는 주소지로 寄留籍(domicile of choice)을 설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류령에 의하면 기류신고가 주민의 임의신고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상황이 극히 부진하여 호적과 실제 생활과의 괴리현상은 여전히 보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기류령이 폐지되었고 1962년 5월 10일에 주민등록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물론 주민등록제도는 단순히 호적과 실제 생활과의 괴리현상만을 보충하는 의의뿐만 아니라 주민의 거주관계와 이동상태까지 명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편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도 의의가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당시 입법취지와는 달리 주민의 신고원칙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작성함으로써 호적과 상관관계가 없는 제도상의 결함을 악용하는 주민이 많아 오히려 공신력이 없는 주민등록이 되었다.

이와같이 1962년부터 시행한 주민등록이 호적과 연관성이 없이 유명무실하게 되자 정부에서는 1968년에 종전의 주민등록법을 대폭 개정하여 주민의 신고사항중 호적과 관련되는 사항은 반드시 호적법에 기준하도록 하고 기타 주민의 제반신고사항도 관련 기관간의 통보에 의하여 확인토록하고 무단 전출입자를 사실조사에 의하여 강제 등록토록 규정, 주민등록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부로서의 공신력을 높이게 되었으나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또는 현지 이민자의 주민등록 정리상태의 미흡, 위장 전출입자의 발생과 이에 대한 사실조사 조치

미흡, 관계기관 통보의 누락 발생,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의 오류, 온라인 처리 및 통계 작성 업무의 숙지상태 미흡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인구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4가지 제도를 요약한 결과과 표 7에 수록되어 있다.

## V. 主要外國의 人口統計作成制度 현황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한 資料源을 갖고 인구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의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日本, 臺灣, 美國을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표 8 참조).

### 1. 日本의 人口통계 작성제도

현재 日本에서 작성되고 있는 인구통계 종류로는 國勢調査, 人口動態통계, 人口이동통계, 住宅표본조사, 推計人口등이 열거될 수 있다. 이중 인구동태통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총무청 통계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인구동태통계는 厚生省에서 작성하고 있다.

日本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호적제도 및 주민등록제도가 있어 上記한 여러 인구통계의 작성을 가능케 하나, 상주인구조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대신 총무청 통계국에서는 호적 및 주민등록 전출입자료를 이용하여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47개 都·道·府·縣별로 인구를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日本에서의 人口動態統計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戶籍法에 의한 申告로부터 作成되고 있다. 그러나 日本의 戶籍制度는 1947년에 戶籍法에 전면적으로 改正한 아래 制度자체 뿐만 아니라 動態統計 生産의 節次가 우리와 다른점이 많다. 예를 들면, 制度的인 측면에서의 長男도 結婚하여 새로운 戶籍을 만들 수가 있다.

또한 戶主란 概念이 없는 대신 筆頭者(戶籍

표 8. 인구통계 작성의 주요 외국현황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인구주택센서스)				
· 주관기관	· 통계청	· 총무청 통계국	· 주계처 제4국	· 상무성 센서스국
· 조사표 회수방법	· 절충형	· 자계식	· 원칙적 자계식	· 자계식(우편에 의 한 배부 및 회수)
· 특징	· OMR조사표도입	· OMR조사표 사용	· OMR조사표 도입	· FOSDIC 처리 방법 도입
(인구동태 통계)				
· 신고업무 주관기관	· 대법원	· 법무성	· 내장부 호정사	· 각 주정부
· 통계작성 기관	· 통계청	· 후생성	· 내정부 호정사	· 국립보건통계센터
· 특징		· 호주제도가 없음	· 호적등기제도로 통 합되어 있음	· 호주중심이 아님 개인별 중심임
(주민등록)				
· 업무주관기관	· 내무부	· 내무성	· 내정부 호정사	· 주민등록 제도 없 음
· 이동통계 생산기관	· 통계청	· 총무성 통계국	· 내정부 호정사	
· 특징			· 주민등록이 별도로 없고 호적등기제도로 통합되어 있음.	
(년별 지역별 인구통 계)				
· 작성기관	· 각시·도가 주민등록에서 통계작성	· 주민등록 및 호적에서 도·도·부·현이 작성	· 가구등록제도에서 내정부가 각종 정 태·동태 통계 작성	· 상무성 센서스국이 50개주에 대하여 추정

簿에 처음記載되는 사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戶籍이 戶主를 中心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個人的 尊嚴과 兩性的 平等을 강조하고 또한 夫婦中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申告節次的인 측면에서 우리와 다른 점은 첫째로 出生·死亡申告書 양식에 醫師가 證明하는 出生證明書와 死亡診斷書가 함께 붙어있고, 둘째로는 市·區·町·村

으로부터 厚生省으로 報告되는 中間과정에 保健所가 介入되어 있는 점이다.

日本の 制度에서 또하나 特記할 사항은 家口概念과 世帯概念間의 差異가 없고 世帯로 統一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日本에서는 世帯를 별도로 分離하게 되면 혜택보다는 不利益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炊事나 居住등 生計를 같이 하는 單位가 世帯로 되는 점이다.<sup>13)</sup>

13) 우리나라에서는 世帯를 별도로 분리하게 되면 주민세 부과등 불이익보다는 아파트 청약, 국민주배당등과 같이 혜택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 2. 臺灣의 人口統計作成制度

臺灣에서의 人口統計作成흐름은 크게 두가지로 區別되어 진다. 하나는 內政部가 主管이 되서 戶籍謄錄制度(household registration system)로부터 各種 人口動態 및 動態統計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主計處의 主管으로 人口센서스 및 標本調査를 實施하여 深層的인 人口統計가 作成되어 지는 것이다.

즉 臺灣에서는 行政報告(戶籍登記制度)를 통하여 人口統計를 作成할 수 있는 制度가 內政部 統計으로 一元化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戶籍登錄制度란 우리나라의 戶籍制度와 住民登錄制度 두가지가 하나로 統合 형태로 看做할 수 있다.

同 戶籍登錄制度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家口가 形成되면 新戶로 家口謄錄을 內政部傘下의 戶政事務所에 하여야 하는데<sup>14)</sup> 이 때 家口全體에 대한 登記事項으로 家口の 形態, 家口員數, 住所, 家口주가 된 思惟 및 日字, 前居住地 및 移動日字를 그리고 家口員에 대한 登記事項으로 家口主와의 關係, 出生順位, 出生年月日, 姓名, 學力, 職業, 配偶者姓名, 父母姓名, 本籍地<sup>15)</sup> 기타(結婚 및 離婚年月日, 住所地變更事項, 入養關係, 姓名變更) 등이 登錄되어야 한다.그러다가 이러한 家口登錄內容에 變動을 주는 事件이 發生하게 되면 國民은 이를 수시로 申告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申告는 앞에서 언급한 本籍登記以外에 身分登記(出生, 死亡, 婚姻, 離婚, 入養, 認知등), 遷徙登記 職業·產業登記, 學力登記로 區分되어지고 있다.

이중 學力, 職業·產業登記는 제대로 안되고 있지만, 身分 및 遷徙登記는 申告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內政部 戶政登記所에서는 수시로(每 4個月마다) 관할구역내의 家口現況狀態를 살펴보아야 하며, 年末에는 戶政登記所 職員이 戶籍登記簿를 가지고 실제 居住與否를 確認하도록 되어 있어 戶籍登記簿가 거의 사실과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臺灣에서는 常任人口調査를 別途로 實施하지 않고, 단지 戶籍登記制度로부터 基本的인 人口統計를 每年 作成하고 있다. 그리고 同 制度의 補充 및 同 制度에서 把握할 수 없는 資料를 蒐集하기 위하여 主計處의 主管으로 每5年마다 人口센서스를 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 3. 美國의 人口統計作成制度

美國의 경우 人口統計를 作成할 수 있는 基本的 制度는 印歐動態申告制度和 人口住宅센서스분이다. 美國에서의 人口住宅센서스는 1790년에 처음으로 實施된 이래 每 10年마다 週期的으로 實施되고 있다. 同 人口住宅센서스는 商務省 센서스局에서 主管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郵便調査 方式을 채택하고 있다.

美國의 人口動態申告制度는 各 州政府가 業務를 관장하고 있지만, 動態統計의 生産은 1945年 以前에는 商務省 센서스局이 1946년부터는 保健後生省의 國立保健統計센터가 擔當하고 있다.

美國에서의 人口動態申告制度는 문자 그대로 動態事件(出生, 死亡, 婚姻, 離婚, 人工流産, 死

14) 이를 本籍登記라 하는데, 이는 新戶로 등록하는 護籍등기와 반대로 말소하는 除籍등기로 나뉘어지고 있다.

15) 본적지라 함은 원칙적으로 출생지를 뜻한다. 즉 본적지는 가구수가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6개월 이상 출생지이외의 곳에 거주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다.

産)만을 申告토록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戶籍制度와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즉 美國에서는 戶籍簿가 별도로 없이, 단지 國民들로 부터 接受된 動態申告書가 各 州政府에 個別的으로 整理·保管되고 있을 뿐이다. 부연하여 설명한다면, 우리나라의 戶籍制度는 戶主를 中心으로 한 家的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美國의 人口動態申告制度는 個人的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申告義務者가 우리의 경우 出生은 父 또는 母, 死亡은 親族, 婚姻·離婚은 當事者가 되는데 반하여, 美國에서는 出生의 경우 醫師나 助産員이 死亡은 葬義社(Funeral director), 婚姻은 主禮者(Marriage officiant), 離婚은 辯護士가 申告義務를 擔當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 VI. 주요 문제점

앞에서 인구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제도가 인구통계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완벽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된다. 그러나 대답은 그렇지 못하고 여러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다음에서 조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상호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 1. 조사상의 일반적인 문제점

- 표본틀의 불완전성
- 조사목표 대상을 정확히 면접함에 있어서의 어려움
  - 조사목적의 특성 : 기혼부인, 경제활동 인구, 가구주, 장애자 등
  - 연령의 한정 관계 : 6세 이상, 12세 이

상, 15세 이상 등

- 조사 완전율상 문제점
  - 불완전한 조사구요도 및 가구명부
  - 조사 개념의 불명확(상주·현주개념, 가구·세대 개념 등)
  - 조사원에 의한 고의적 은폐
  - 조사대상의 누락, 중복(고의성, 비고의성)의 문제
  - 公簿와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
- 무응답 오차에 대한 문제점
  - 조사원이 면접을 시도하였으나 응답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또는 아예 접촉을 시도 안한 경우
  - 응답자의 가구 부재
  - 응답자의 응답 거절
  - 조사표의 분실 등
- 응답 오차에 대한 문제점
  -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가 이해를 못함
  - 실제로 응답자가 나이나 소득등을 알지 못하거나 기억을 하지 못함
  - 잘못 설계된 조사표
  - 주의 여건에 의해 잘못된 정보 제공(학력, 소득등)
  - 조사원의 주관 기재
  - 부적절한 응답자로부터의 정보획득(proxy response)

### 2. 상호 복합적인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는 조직적 측면, 법적 측면, 개념정의 측면 그리고 절차적 측면 모두에서 통일화되어 있지 못하고 상호 복잡하게 얽혀 다원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먼저 법적 측면을 살펴보면, 인구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은 호적법, 주민등록법과 통계법의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가지 관계 법률들은 동일한 종적 체계내에서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호적법은 사법부에서, 주민등록법은 내무부에서, 통계법은 통계청에서 서로 다른 부처의 관장하에 횡적으로 독립·분리되어 있어 법률간의 상승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6)</sup>

따라서 조직적으로도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와 아울러 호적제도나 주민등록제도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호적업무에 대한 감독은 지방법원을 통하여 사법부가, 주민등록업무는 내무부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상주인구조사는 1962년에 지정통계 제7호로 되어, 종래의 경제기획원 주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각시·도가 주관이 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중앙조직의 다원화는 결국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 일선조직이나 중앙조직도 통계담당조직과 행정담당조직으로 나뉘게끔 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게끔 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중간단계인 구·시·군청의 조직을 살펴보면 인구주택총조사나 상주인구조사의 경우는 통계계가, 호적업무의 경우 업무처리는 시민과(시민봉사실)이 그러나 감독은 지방법원 호적계가, 주민등록업무는 총무과 행정계 또는 시정계가 각기 담당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의 경우 시·도 조직을 살펴 보더라도 모든 통계적인 측면은 통계담당관실이, 행정적인 측면은 지방과(특별시는 행정과, 직할시는 시정과)가 담당하는등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다원화 현상은 개념정의상에서도 나타난다. 인구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네가지 제도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 되어야 할 가구, 세대, 戶, 가족등의 용어들이 통일 안되고 상호 별개적으로 또는 명확한 구분이 안된

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 개념을 살펴 보면 가구라는 개념은 “혈연관계를 떠나 단순히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나 거주등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로서 인구주택 총조사나 상주인구조사등 통계적인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반면, 세대는 실제의 생활여부와는 관계없이 단지 주민등록법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용어(일본용어)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戶란 개념도 실제의 생활여부와는 관계없이 호적법에의 호주를 중심으로 일가를 이룬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통계목적에 쓰이고 있는 가구개념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사용되고 있는 세대와 같은 개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戶도 “생식활동으로 출생 또는 입적이나 결혼등을 통해서 두사람 이상으로 혈연관계가 이루어진”가족이라는 개념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예를 들면 결혼한 장남이 주민등록법상 별도의 세대나 통계상 한 가구 또는 한 가족을 형성하여 살고 있다라도, 호적부에는 호주의 자로 기재되고 있는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개념이 상호 일치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 다른 다원화현상은 신고절차상(장소적) 측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호적법상이나 주민등록법상 인구동태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를 본적지나 주소지 또는 발생지 모두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본적지나 주소지 또는 발생지는 모두 우리가 실제 거주하고 통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주지와 다를 수 있어 결과 분석상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원칙적으로 인구동태사건은 그 사건을 경험한 자가 상주하고 있는 지역(출생의 경우 모의 상주지,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상주지)에서 신고가 되는 것이 가

16) 신운재, 인구동태 신고 및 통계조사의 개선 방안, 인구학회지, 제11권 제1호, 1988

장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만 상주지 개념으로 파악된 인구주택총조사나 상주인구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각종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는 상주지와는 무관하게 대부분 주소지나 본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인구분석을 함에 있어 큰 장애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자료출처간 비교분석하기에 상호연계성이 미흡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사상 파악되는 인구수의 증가가 신고상 파악되는 인구 변동요인과 맞아 떨어지는 경우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사망신고의 경우도 매·화장 허가신고 상호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조사상 파악될 수 있는 가구나 주택수의 증감과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신고상의 변동요인(혼인에 의한 분가 또는 직장관계나 독립적으로 생계 유지능력이 있어 일부 전출입에 의한 세대구성, 건축착공 또는 허가신고에 의한 주택신축과 철거등) 이 상호 비교 분석하기가 어려운 실적이 있다.

예를 들면 조사상 파악되는 아파트 수나 건축면적등이 신고에 의해 파악되는 아파트 건립현황이나 주거용 목적의 건축허가 면적 등과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상에서 살펴본 복합적인 문제는 비단 인구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토지 또는 주택 관련 분야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즉, 토지 또는 주택과 관련된 법령도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업무도 행정부(토지·임야 및 가옥대장 관리)와 사법부(부동산 등기)로 이원화 되어 있고, 자료내용도 상호 완전히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VII. 結 言

현재 우리나라에서 人口統計를 작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資料源인 인구주택 총조사, 戶籍

및 住民登錄 제도에 대한 연혁 및 현황을 살펴 보았다. 종전에는 상주인구조사도 인구통계의 資料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1992년부터 조사가 중단되었고 대체방안으로 주민등록에서 연말기준으로 인구통계를 작성·사용토록 하였다.

이러한 연혁 고찰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과거 戶口成籍이라는 하나의 제도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발전되고 세분화되어 오늘날에는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상주인구조사는 이미 조사가 중단되었기 때문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현재의 호적신고와 주민등록제도는 상호 중첩된 면이 많지 않나 싶다. 즉, 법률적 측면, 조직적 측면, 개념적인 측면 또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통일적이지 못하고 二元化 현상을 보이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외에 호적신고 및 주민등록제도가 統計 생산의 중요성보다는 법적인 신분확인 측면 쪽으로 너무 기울여진 경향도 있어, 신고제도의 양대 기능중의 하나인 통계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실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곳과 일치 않고 있는 등 통계목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호적신고 제도도 실제 거주지와는 괴리가 많은 本籍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統計目的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制度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과거 統一新羅때의 村籍制度나 대만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제도로 統合되어 국민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또한 각종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및 계획수립에 필수적인 人口統計 자료가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하겠다.

### 參考文獻

- 金景中, 韓國의 經濟指標, 每日經濟新聞社, 1989
- 孫禎睦, 朝鮮時代 都市社會研究(6刷), 1988
- 愼潤宰, 人口動態申告 및 統計調查의 改善方案, 人口學會誌, 1988
- 梁泰鎮(編), 1902년 邊界戶籍案, 法經出版社, 1992
- 尹鍾周, 우리나라 · 古代人口에 관한 少考, 人口學會誌, 1985
- 尹鍾周, 우리나라 人口動態申告체계의 史蹟考察, 인문사회 과학논집 제2집, 서울女大, 1983
- 李光奎, 韓國家族의 史的研究(6刷), 一志社, 1990
- 梨樹健, 朝鮮初期 호구연구, 한국사 논문선집 IV. 1976
- 李鉉淙, 韓國의 歷史(3版), 1986
-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 研究(2刷) 一志社, 1986
- 崔弘基, 韓國戶籍制度史 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5
- 韓榮國, 朝鮮王朝 戶籍의 基礎的 研究, 한국사학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한우근, 韓國通史, 을유문화사, 1969
- 許興植, 高麗社會史研究(再版), 아세아문화사, 1983
- 震檀學會, 韓國史(전7권), 을유문화사, 1959~1967
- 統友會, 韓國統計發展史, 1989
- 度支志, (법제처, 법제자료 제91집 1977)
- 戶糊口總數(서울대학교 출판부 影印本)
- 三國遺事(명지대학문고)
- 牧民心書(민족문화추진위, 1969)

〈Abstract〉

## Historical Development in the Population and Household Survey System in Korea

Bong – Ho Choi\*

The historical study reveals that our ancestors had maintained a system which could produce data on population and households. The main purposes of maintaining the system at that time were taxation and conscription.

At the present time, however, there are three major data sources which produce the statistics on population and households in Korea : Civil Registration System,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and Population Census.

These three systems are found to have some problems. there are some inherent problems in the registration systems, such as problems in its coverage, accuracies in contents and timeliness in reporting the vital events and publishing the results.

The population census has also non-sampling errors, such as errors in coverage, response and non-response.

Apart from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there are also conflicting problems arising from having three data sources, We can find some overlapping problems and difficulties in comparative studies.

In the future, these problem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statistics on population and household.

---

\* National Statistical office